



## 아파트 16층서 떨어진 고양이, 주인에 벌금 300만원...법원 “주인이 던졌다”

아파트 16층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양이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지난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14일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고양이를 난간 밖으로 던져 죽게 하고, 이를 지적하는 초등학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약식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것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고양이를 던진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집에서 탈출한 고양이가 아

파트 복도 난간에 올라갔으며, 잡으려고 손을 뻗은 순간 난간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16층에서 떨어진 고양이는 그대로 숨졌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5시간 전에 고양이를 분양받았다.

A씨 주장과 달리 목격자들은 A씨가 고양이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건너편 아파트에서 상황을 목격했다는 동네 주민은 법정에 나와 고양이 얼굴이 A씨를 향한 채 ‘직선’이 아닌 ‘포물선’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고양이가 떨어진 직후 아무런 반응이 없던 A씨가 한참 뒤에서야 고양이가 숨진 곳에 도착했다고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고양이를 아파트 난간 밖으로 던진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발생 당시 A씨의 동작이 ‘물체를 밖으로 던지는 모양’이었던 점, 고양이가 추락한 지점이 실족으로 자연스럽게 낙하했다고 보기에는 멀리 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식명령에서 기재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경향신문 & 경향닷컴)